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강수정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056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1. 2. 8.

발 의 자 : 강수정 의원

찬 성 자 : 이경옥, 김용술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정례회의 등 회의 일수를 늘리고, 우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연간 회의총일수는 '100일 이내'에서 '110일 이내'로 함(안 제2조)
- 나. 정례회는 연간 '45일 이내'에서 '55일 이내'로 하며, 임시회의 매 회기는 '10일 이내'에서 '15일 이내'로 함(안 제3조)
- 다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로 변경함(안 제4조)
- 라.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7조
 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일부개정 조례안 : 별도 첨부
- 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도 첨부
- 3) 입법예고 : 2021. 2. 8. ~ 2. 15.
- 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100일”을 “110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45일”을 “55일”로 하고, “10일”을 “15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11월 25일”을 “11월 18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 한다.
-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회의총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<u>100일</u> 이내로 한다. 단,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회의총일수) ----- ----- --- <u>110일</u> ----- . ----- ----- .</p>
<p>제3조(회기)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,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<u>45일</u> 이내로 하며, 임시회의 매 회기는 <u>10일</u> 이내로 한다.</p>	<p>제3조(회기)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<u>55일</u> -----, ----- <u>15일</u> ----- .</p>
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25일</u>에 집회한다.</li> </ol>	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 <u>11월 18일</u> ----- .</li> </ol>
<p>제5조(심의) ① <u>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	<p>제5조(심의) ① <u>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

# 현행 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04.08., 2015.3.2.>

제2조(회의총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2.>

제3조(회기)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,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, 임시회의 매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5.3.2.>

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'08.04.08, 2012.12.31., 2015.3.2.>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31., 2015.3.2.>
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 한다. <개정 2008.04.08., 2015.3.2.>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'08.04.08., 2015.3.2.>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 관련 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44조(정례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- 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

- ① 지방议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-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

-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议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  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 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-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